

제7장 대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용자들이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사업단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연 및 전시 공간
2. 야외마당
3. 숙박체험관
4. 다목적 공간, 교육 및 체험 공간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공연행사 또는 일반행사를 위해 사업단 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업단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사업단 부지 내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5. “입장료”란 시설에서 진행하는 유료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공연행사”란 음향 및 조명, 무대장치를 사용하는 행사를 말한다.
7. “일반행사”란 음향 및 조명, 무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대관 및 대관의 종류) 사업단의 자체사업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할 수 있다.

1. 준비 대관 : 행사 전 설치를 위한 대관
2. 리허설 대관: 행사 전에 행사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본 행사 대관 : 실행되는 본 프로그램을 위한 대관

4. 철수 대관 : 행사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5. 촬영 대관 : 방송, CF, 영화 촬영 등을 위한 대관

제5조(공예공방의 대관) 사업단의 자체사업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사업단의 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문화지구 누에 사용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식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계약을 체결한다.
3. 사용자는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준비,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사업단장은 대관행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사익을 위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경우
5. 기타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 공연·전시
4. 기타 면제 및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제10조(준용) 본 대관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및 완주문화재단 정관 및 제규정을 따른다.